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0. 7. 9 선고 2019가단22945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변론 종결 2020. 6. 11

판결 선고 2020. 7. 9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180,448,7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, 원고가 2019. 6. 20.부터 2019. 8. 6.까지 피고로부터 총 5회 합계

7억 1,00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원리금을 변제하였는데 그 중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변제된 돈이 180,448,768원에 이르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반환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 및 원리금 변제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,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.

판사 윤상도